

**2020 경기도 (사회적)협동조합 설립컨설팅
참가자(신청기관) 모집 공고**

경기도 내에서 (사회적)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거나 현재 법인을 (사회적)협동조합 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협동조합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『2020 경기도 (사회적)협동조합 설립컨설팅 참가자(신청기관)』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지원이 필요한 모임(법인)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0년 6월 11일

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

1.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20 경기도 (사회적)협동조합 설립컨설팅 참가자(신청기관) 모집
- 사업기간 : 2020년 6월 ~ 12월 (예산 소진시까지)
- 주요 지원 내용
 - (사회적)협동조합 신규 설립 및 (사회적)협동조합 조직변경 컨설팅 지원
 - (사회적)협동조합 분할합병, (사회적)협동조합 연합회, 이종간협동조합연합회 등 컨설팅 지원
 - (사회적)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변경 준비, 진행에 관한 제반 사항 지원
 - ※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, 유형별 협동조합 설계, 정관/규약 및 사업계획서 작성, 설립 준비 및 설립 서류 작성, 창립총회 또는 조직변경 총회 진행 안내 등

2. 모집 대상

□ 조직변경, 분할·합병, 연합회 관련 컨설팅

- 신청자격 :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예정이며 (사회적)협동조합 설립 또는 조직변경, 연합회 설립 등을 목표로 하는 모임(법인)

□ 설립지원 관련 컨설팅

- 신청자격 : (사회적)협동조합 발기인 모임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이 아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교육을 17가지 이상 이수한 경우

-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‘찾아가는 협동조합 기본교육’
 - 관련 기관(지방자치단체, 대학 부설기관, 권역별 지원기관 등)의 협동조합 기본·기초교육 등
- ※ 이수교육의 경우 ‘협동조합 단일과정’이어야 하며 총론 강좌의 일부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
(예) ‘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개발’ 과정(○)
‘사회적경제의 이해’ 교육과정 중 일부 챕터로 협동조합 이해 교육이수(X)

※ 설립지원 관련 컨설팅의 경우 참가자(모임) 구성원 5인 이상이 컨설팅 참여 권고

모 집 제 외 대 상

- 모임(법인)의 구성원이 5인 이상 구성되지 않은 경우
- (사회적)협동조합의 주사무소를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두려는 경우
- (사회적)협동조합의 주 사업으로 금융업, 보험업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
- (사회적)협동조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
- 보조금 횡령·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태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경우

※ 협동조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<협동조합 찾아가는 기본교육> 신청을 부탁드립니다

3. 신청 방법

□ 신청 기간 : '20.6월 ~ '20.10월

※ 상시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, 컨설팅은 11월까지 진행가능

□ 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 (접수처 : giban@gjf.or.kr)

※ 전자우편 제목 및 붙임파일명은 “설립컨설팅_팀명”으로 작성하여 제출

※ 서류제출 후 ☎1522-0561를 통해 접수여부 확인 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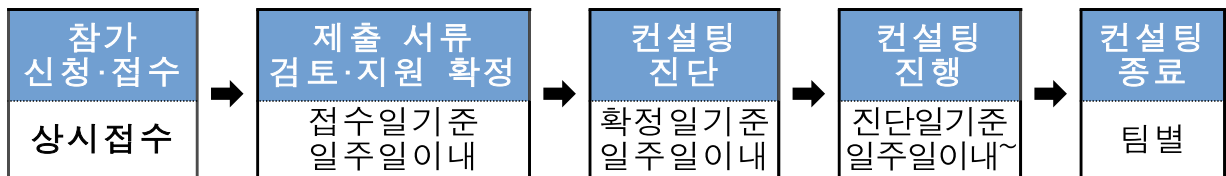
□ 필수 제출 서류

- 아래 서식1,2 작성 후 에 수기서명(또는 도장 날인)을 삽입하여 한글파일 또는 스캔파일로 저장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 ※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

1. [서식1] (사회적)협동조합 설립컨설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
2. [서식2] (사회적)협동조합 설립컨설팅 참가자명부 1부.
3. (해당 경우*) 협동조합 기본·기초 교육 등 교육이수 증빙자료 각1부.

*설립지원 관련 컨설팅을 신청하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이외 관련기관의 협동조합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필수 제출

4. 신청·지원 절차



- 컨설팅 신청은 최소 10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야 함
- 컨설팅은 최대5회(진단 1회차, 팀별 4회차 내외) 진행
- 지원 컨설턴트와 해당 모임(법인)이 장소 협의 후 컨설팅 진행
 - ※ 컨설팅 진행 일정은 참가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- ※ 컨설팅 회수는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차로 진행합니다.

5. 선정방법·결과 발표

- 선정방법 :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사업 담당파트에서 선정
- 결과발표 : 선정단체 개별통지

6. 기타 사항

- 문의처 : 기반조성파트 (☎ 1522-0561, 032-668-8544)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선정 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.
-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,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.